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1125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9.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24. 접수 제30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D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2441)를 제기하여, 2014. 3. 10. ‘C은 원고에게 6,305,653원과 그중 2,069,959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2020. 8. 10. 위 판결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C의 처분행위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아버지인 E은 2020. 9.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자녀 C과 피고, F, G은 2020.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20. 9. 7. 기준 C은 원고에 대한 판결금 9,027,791원1)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비영업용, 적재정량 1000)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C에게 위와 같은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0. 9. 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24. 접수 제30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

1) = 6,305,653원 + 2,069,959원에 대한 2014. 2. 12.부터 2020. 9. 7.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22,138원